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시설급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계 약 당 사 자							
이용자 (갑)	성 명	(인)			등 급		
					(인증번호)	L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주 소						
	기 타	☐ 일반 20%	☐ 경감 12% (40)	☐ 경감 8% (60)	☐ 국민기초생 활수급권자	☐ 등급 외	
제공자 (을)	시 설 명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종류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시 설 장	오 근 영 (인)			연 락 처	02) 2066-7799	
	주 소	서울 구로구 경인로 393-7 2동 8, 9, 10층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성 명	(원)			관 계	‘갑’의 ()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주 소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에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 ① 계약기간은 _____ 부터 _____ 까지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 (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 ⑥ ‘갑’ (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전에 서면 신청해야 한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 ① ‘갑’ 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_____에 납부하기로 한다.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_____일 납부하기로 한다.(_____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 ③ ‘갑’ 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_____로 한다.
- ④ ‘갑’ 또는 ‘병’ 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 이 별도 부담한다.

◇ 시설급여

(30일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4등급/5등급
급 여	일 이용료		☐ 90,450원/일	☐ 83,910원/일	☐ 79,240원/일
	월 이용료(본인부담20%)		☐ 542,700원/월	☐ 503,460원/월	☐ 475,440원/월
	월 이용료(경감대상12%)		☐ 325,620원/월	☐ 302,070원/월	☐ 285,260원/월
	월 이용료(경감대상8%)		☐ 217,080원/월	☐ 201,380원/월	☐ 190,170원/월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1인실	☐ 300,000원/월 (1일 10,000원)		
		2인실	☐ 150,000원/월 (1일 5,000원)		
	식재료비/간식비	일반식	☐ 420,000원/월 (식사 4,000*3회, 간식 1,000*2회)		
		경관식	☐ 450,000원/월 (식사 5,000*3회)		
일 반	일반(본인부담)	4인실	☐ 2,377,200원/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 받는 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감경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경한다.
-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이용료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식사, 간식비는 생계비로 대체됩니다).
-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마지막에 작성하여 명시된 계약서(별지포함) 및 인상된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 (안내) 수급자 자격별 본인일부부담 비율 >

구 분	시설급여	재가급여
일반	☐ 20%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12%	9%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8%	6%
등급외	☐ 100%	100%
기초수급권자	☐ 0%	0%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세부내역(30일 기준) * 3 ~ 5등급

구 분	금 액 (원)	내 역
총 계		
요양보험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일반20%)	
	요양급여비용(감경12%)	
	요양급여비용(감경8%)	
	요양급여비용(일반100%)	
개인 부담비용	소 계	
	요양급여비용(00%)	
	식사재료비/간식비	
	상급침실 이용료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가) 기본원칙

- (1)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2)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나)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제4조 【 계약자 의무 】 ‘갑’ 과 ‘을’ 그리고 ‘병’ 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 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 의 의무

1. ‘갑’ 의 건강관리 협조
2. ‘갑’ 의 신변이상을 ‘병’ 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의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 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 의 의무

1. ‘갑’ 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 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 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 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 의 해지

1. ‘갑’ 과 ‘병’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 의 해지

1. ‘갑’ 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 은 ‘갑’ 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 ① ‘을’ 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갑’ 과 ‘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을’ 에게 제출하고 ‘을’ 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 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 (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 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 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 ③ ‘을’ 은 ‘갑’ 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 이 지정한 (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 ④ 제5조①항에 의거하여 ‘병’은 ‘을’에게 반드시 퇴소 1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 ⑤ 만약 제4항에 위반하여 퇴소할 경우 ‘을’은 ‘병’에게 다음과 같이 위약금을 부과하고, ‘병’은 ‘을’에게 지체 없이 위약금을 납부하고 퇴소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별지 2. 퇴소통보 및 위약금 안내 및 동의서]의 내용으로 한다.
1. 위약금 산정기준은 ‘갑’의 장기요양급여 일일청구수가×본인부담률×남은 일수 (최대 10일)로 하며, 식대비는 제외한다.

제7조 【 입소물품 】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 ① ‘갑’의 면회는 월 2회로 하며 지정된 요일에 사전예약제로 실시한다.
(단 ‘갑’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 ② ‘갑’은 외출·외박 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당시 감염병 등 상황을 고려 ‘을’이 결정한다.
-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할 수 있으나, 반입된 음식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갑’ 또는 ‘병’이 책임진다.
-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및 서비스 제공 】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 ③ ‘갑’은 본 시설에 소속된 전 종사자(성별에 구애받지 아니한다)를 통해 입소 생활 시 필요한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제공받을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계약별지 3. 이성 간 케어 서비스 안내 및 동의서]의 내용으로 한다.
1. 생활 서비스 : 옷 입고 벗기, 청결관리[목욕, 배변(위생대 케어 포함), 청소, 세탁 등], 식사보조, 이동보조, 말벗 서비스 제공, 시설 제공 프로그램 참여
2. 간호 서비스 : 촉탁의사 진료(월 2회), 가정간호 처치(필요 시), 건강상태 체크(일일 1회), 상처/혈당/투약관리.
3. 재활 서비스 : ‘갑’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 : 통증치료(온열치료, 마사지), 운동치료(관절 및 근력 운동, 보행훈련), 작업치료.
4. 영양 서비스 : ‘갑’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한 식사 제공.

제10조 【 건강관리 】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 ④ ‘을’은 입소 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 ⑥ ‘을’은 ‘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 시 지체 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 ⑧ ‘을’은 ‘병’의 요청으로 ‘갑’에게 가정 간호사로 하여금 L-tube 교체, 도뇨관 교체, 영양제, 비타민 등의 가정간호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 ②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 시 조치 】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 (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 ‘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을’은 ‘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병’과 정산할 수 있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

- ① 1일 3식 및 간식을 “갑”에게 제공한다.
- ②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식재료비는 “을”이 시, 군, 구로부터 생계비로 대체한다.
- ③ ‘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한다.

제15조 【 영양실의 배정 】 ‘갑’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에서 주관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변경 후 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려준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 ①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②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 ③ ‘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으로 한다.
- ④ ‘갑’은 ‘을’이 수집·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갑’이 임의로 활동하여 발생한 손해와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소자 간의 다툼으로 인한 손해 일 경우는 입소자 당사자 간에 배상책임으로 한다.

제19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갑’, ‘병’은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갑’	☐	☐
보호자 ‘병’	☐	☐

【 법적 책임에 대한 확인 및 동의 】

‘병’ 대리인(보호자)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입소자의 법률상 적법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이거나, 가족을 대표하여 본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본 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본 시설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계약자) ‘갑’ 이용자 (인)

‘을’ 시설장 오 근 영 (인)

‘병’ 대리인(보호자) (인)

(작성일) 년 월 일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HYODORO SENIOR CARE CENTER

공 의 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관련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 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제공
(프로그램 활동사진 기관홈페이지 공개 등 포함)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상기 본인과 보호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작 성 일 년 월 일

이 용 자 : (손)

보 호 자 : ()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대리 신청서

호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이용자(어르신)들의 원활한 입소생활을 위하여 장기요양인정 갱신 심사를 위한 대리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 갱신을 위해서는 개인정보활용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대리신청을 수락하시는 분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

이용자(어르신)성함	이용자(어르신)주민등록상 주소지	보호자 연락처	관계	보호자서명
				

치매 검사 동의서

_____는 효도로노인전문요양원과 업무협약이 된 구로구 치매지원 센터에서 지원하는 **입소어르신의 치매검사를 진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활용 및 치매검사 실시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 본 익(어르신) 성명 (4)

□ 입소 어르신과의 관 계

☐ 보호자 성명 (94)

「퇴소 통보 및 위약금」 안내 및 동의서

- ① 입소 어르신의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는 본 시설에 퇴소 예정일 기준 10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구두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보호자가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퇴소를 진행하거나, 퇴소 예정일 기준 10일 미만의 시점에 고지할 경우, 본 시설은 이미 확보된 인력, 식사 준비 등 사전 조정이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위약금(손실 보상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산정기준]

- 입소 어르신 등급별 일일 청구 수가×본인부담률×남은 일수(최대 10일)
- 식대비용은 청구하지 않습니다.

- ③ 본 시설의 퇴소 사전 고지 기준(10일)은, 장기요양보험공단이 ‘외박 중 퇴소’ 처리 시 인정하는 10일 기준과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퇴소로 인한 운영 혼선을 방지하고 원활한 요양서비스를 위한 최소 준비기간입니다.

- ④ 단, 다음의 경우에는 위약금(손실 보상비용)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1. 입소 어르신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병원 이송 후 장기치료 또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
2. 예기치 못한 건강상 위기 등으로 인해, 본 시설 또는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즉각적인 퇴소가 필요한 경우
3. 감염병, 재해,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해 정상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그 외 시설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

※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약금은 면제되지만, 퇴소 전 공단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가 제공된 기간(예: ‘외박 중 퇴소’ 인정 기간 등)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별도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갑’, ‘병’)은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갑’	☐	☐
보호자 ‘병’	☐	☐

【 법적 책임에 대한 확인 및 동의 】

‘병’ 대리인(보호자)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입소자의 법률상 적법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이거나, 가족을 대표하여 본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본 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본 시설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서명 또는 날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일

년 월 일

「이성 간 케어 서비스」 안내 및 동의서

① 목적 및 취지

본 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제공 시 입소 어르신의 존엄성 및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며, 전문적이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모든 직종의 돌봄 인력**이 이성의 입소 어르신께도 신체 접촉이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이성 간 돌봄 서비스 내용

- 목욕 및 신체 청결 유지
- 배설(기저귀 교체 포함) 도움 및 위생 관리
- 의복 갈아입기 및 침상 정돈 보조
- 기타 입소자의 건강과 위생 유지를 위한 필수 신체 접촉을 포함한 돌봄 활동

③ 돌봄 시 원칙 및 안전조치

- 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프라이버시와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 돌봄 서비스는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제공되며, 어르신이 신체적·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④ 보호자와 입소자의 선택권 안내

-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이성 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대해 동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시설은 입소자와 보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동성 직원 우선 배치 등 합리적 대안**을 강구합니다.

⑤ 현실적 제한 및 입소제한 가능성 안내

- 다만, 시설 운영상 현실적으로 동성 직원만을 배치하기 어렵거나 돌봄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사전 안내 및 협의를 통해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 간 돌봄을 완전히 배제하는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입소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본인(‘갑’, ‘병’)은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갑’	☐	☐
보호자 ‘병’	☐	☐

【 법적 책임에 대한 확인 및 동의 】

‘병’ 대리인(보호자)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입소자의 법률상 적법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이거나, 가족을 대표하여 본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본 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본 시설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서명 또는 날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일

년 월 일

신체구속에 관한 설명서 및 동의서

본 시설 입소 어르신의 상태가 긴급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 • 시간에 따라 최소한의 신체구속을 실시합니다. 단, 신체구속을 해제하는 것을 목표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검토, 실시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① 절박성 : 본인 또는 다른 이용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때
- ② 비대체성 : 신체구속/행동제한을 하는 것 이외에 대체할 케어 방법이 없을 때
- ③ 일시성 : 신체구속 기타 행동제한이 일시적일 때.

☐ 신체구속 시행 날짜 및 기간	
☐ 신체구속 실시 사유	
☐ 신체구속의 방법	
☐ 신체구속 실행 시 주의사항	

상기와 같이 실시하겠으며, 관련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본인(‘갑’, ‘병’)은 관련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갑’	☐	☐
보호자 ‘병’	☐	☐

【 법적 책임에 대한 확인 및 동의 】

‘병’ 대리인(보호자)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입소자의 법률상 적법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이거나, 가족을 대표하여 본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본 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본 시설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서명 또는 날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일

년 월 일

생활복 이용 동의서

본 시설은 입소 어르신의 사복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실종대비 및 청결하고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직접 제공하는 생활복 착용을 희망하시는 경우 우측 빈 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서명 
--	--

틀니관리 안내 및 동의서

본 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의 틀니를 항상 최선을 다하여 관리해 드립니다. 그러나, 관리를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분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입소자 ‘갑’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틀니 분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호자 ‘병’은 틀니 분실에 따른 책임을 본 시설에 묻지 않겠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음을 확인하고 우측 빈 란에 서명함으로써 동의합니다.	보호자 서명 
---	--

비 상 연 락 처

구 분	이 름	관 계	생년월일	연 락 처 (집전화)	거주지역
보호자 1					
보호자 2					
보호자 3					
보호자 4					
보호자 5					

합 의 서

본인[‘병’ 대리인(보호자)]은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 어르신을 입소 의뢰하면서 입소 후 어르신이 입소생활 도중 어르신의 서비스 제공 거부 및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피해 또는 사고(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또는 지병악화, 어르신 스스로 부주의로 발생한 낙상에 의한 골절 및 사망, 이동 중 사고, 어르신 간의 다툼으로 인한 상해 시 보상 등)시에 대한 보호자의 의무를 설명을 들어서 이해했으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여도 시설에 치료비 배상을 비롯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 첨 부 : 이용자(보호자) 신분증

제공자 :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393-7)

본인(‘갑’, ‘병’)은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본 계약 조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갑’	☐	☐
보호자 ‘병’	☐	☐

【 법적 책임에 대한 확인 및 동의 】

‘병’ 대리인(보호자)는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자신이 입소자의 법률상 적법한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성년후견인 등)이거나, 가족을 대표하여 본 동의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또한, 보호자는 향후 다른 가족 구성원 또는 법적 대리인의 반대 등으로 인해 본 동의서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본 시설이 이로 인해 입게 될 수 있는 민·형사상 책임 또는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갑’ 이용자

(서명 또는 날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또는 날인)

작 성 일

년 월 일

입소비 환불 신청 설명서 및 동의서

본인[‘병’ 대리인(보호자)]은 아래와 같이 입소 어르신의 입소비용 환불 사유에 따른 환불 신청 방식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환 불 발 생 사 유	
1. 외박 (외박일로부터 10일 이후 자동 퇴소) 2. 등급 갱신, 변경으로 인한 본인부담액 변동 3. 본인부담금 요율 변경 시 4. 착오 입금 5. 퇴소	
환 불 받 을 예 금 주	
어르신과의 관계	※입소 시 제출된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상 직계가족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이 메 일	@

‘병’ 대리인 (보호자)

(서명 는 날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작 성 일

년 월 일

CCTV 동의서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에서는 본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입소어르신들의 입소생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복도, 거실 등 공용부분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 CCTV 촬영목적 : 입소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확인 및 보호
2. CCTV 촬영장소 : 복도, 데이룸, 생활실 등 공용부분 포함
3. CCTV 설치장비 : 고정식 CCTV

본인(‘갑’, ‘병’)은 관련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선택(✓)하고 동의합니다.

구 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입소자 ‘갑’	☐	☐
보호자 ‘병’	☐	☐

‘갑’ 이용자

(서명 는 날인)

‘병’ 대리인(보호자)

(서명 는 날인)

작 성 일

년 월 일

노인인권보호지침(노인학대 대응방안) 안내

1. 노인 학대 대응방안

1) 법적·제도적·사회적 대응방안

①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시각의 필요

노인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여 국가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노인과 가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사회서비스적인 체계가 모색되어야 한다.

② 노인학대 관련 법 제정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 장치로서 독립된 노인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한 소극적인 대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③ 노인 방임에 대한 사회적 대책 필요

원인으로는 가족의 무관심, 방임, 경제적 곤란, 요보호노인(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치매노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는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④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 장치 필요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며, 동거하는 가족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폐된 노인학대의 발견과 개입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2)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의 주요 내용

■ 노인학대 관련 서비스의 법적 근거(노인복지법)

- ▶ 노인복지법 개정 : 2004.1. 노인복지법 개정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 개정 노인복지법에 신설된 노인 학대 관련 규정의 주요골자

① 노인학대 등 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제1조의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학대 신고 긴급전화를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 4)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의 예방, 발견, 보호 등을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함(제39조의 5)
④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일정 한 자에게는 신고를 의무화 함(제39조의 6)
⑤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현장 출동 등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이 조사 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 7 및 제39조의 10)
⑥ 노인학대행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함(제39조의 9 및 제55조의 2, 제55조의 4)
⑦ 학대노인보호와 고나련된 업무를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39조의 11 및 제57조의 제2호)

■ 가정폭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9조)으로 강제성은 없음

■ 형사 및 형사 특별법

▶ 형법상의 존속 규정

형법 존속과 관련한 가중처벌규정들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과 합헌의 논란이 있으나 현재까지는 합헌으로 인정되고 있다. 노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생명, 신체의 보호규정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형법상의 존속은 오로지 법률상의 존속만을 의미한다.

노인학대 예방교육

1.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보건복지부 2006)

- 1) 노인의 인권 및 학대 관련 교육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정기적인 상담, 욕구 및 선호도에 따른 서비스
- 3) 가정과 같은 환경조성의 의무 : 시설생활관련 안전 및 정서적 안정
-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긴급, 일시적 제한의 경우 사유 기록과 보호자에게 통지
-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관련 정보, 기록 공개에 대한 사전동의(가족동의)
- 6) 통신의 자유(전화, 우편물 이용 등),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 : 투표권 인정, 종교행사 강요, 문화적 다양성 인정
- 7)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노인 스스로 관리)
- 8) 개인적 견해, 의사표현의 욕구
 - ① 건의함 설치, 운영위원회 운영
 - ② 불평에 따른 차별적 처우/불이익 개선, 시설 내·외부활동 참여의 자유 : 외출, 외박의 기회의 보장, 면회나 방문객 허용.
 - ③ 자기결정권 행사의 자유 : 시설 입·퇴소의 결정(본인 및 가족의 결정권 존중)

2. 노인학대의 원인

노인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신장애, 알콜중독, 무기력감 등
노인의 의존성	장애, 질병, 치매 등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	성격, 정서장애, 알콜중독, 약물중독 등
케어제공자의 부양 스트레스	신체적·정신적 스트레스, 부양미숙, 부양능력 결여 등
가정환경적 요인	경제적 문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힘의 갈등 등
사회문화적 요인	노인차별,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 결여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	피해자의 과거 양육 불이행 및 가정폭력 행사

3.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

- 1) 정의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노인복지법 제1조 제3호)
- 2)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 ① 가정 학대 :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게 의해 행해지는 학대
 - ② 시설학대 : 노인에게 비용(무료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 ③ 기타 :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 3) 형태적 분류
 - ①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② 성적 학대 : 학대행위자의 행위로 말미암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
 - ③ 언어-정서적 학대 : 학대행위자에 의하여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
 - ④ 재정적 학대(착취)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⑤ 방임 학대(자기방임 포함) :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 ⑥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 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62항)

- ① 의료법 제3조 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
- ②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③ 장애인복지법 제48조-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④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 담당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사자
- ⑤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⑥ 소방서의 구급대원
- ⑦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신고의무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함.
- 노인복지법 개정안 통과(2009년 03월)

※ 상담전화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수급자 : (서명)

작성자 : (서명)

작성일 : 년 월 일

폭언·폭행·성희롱 발생예방 및 상호존중 수칙

우리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은 모든 직원과 수급자가 상호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수급자 및 보호자는 요양원 직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서로 간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은 하지 말아주세요.
3.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로부터 인권 침해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우리 효도로 노인전문요양원은 수급자의 급여 이용에 관한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수급자가 직면한 상황과 특성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에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5. 폭언·폭행·성희롱은 관련법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상대방의 외모, 성적으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언어적, 신체적, 시각적 등)는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세요.
7. 누군가의 말과 행동은 상처가 될 수 있으며,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 주세요.
8.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여 주세요.
9. 수급자와 직원간의 서로를 존중하고 입장을 이해하여 주세요.

수급자 : (서명)

작성자 : (서명)

작성일 : 년 월 일